동작구의회공고 제2023-100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> 2023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

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

1. 제안이유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동작구민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동작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예방접종 지원 종류와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, 제6조)
- 라. 예방접종의 위탁과 지원절차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, 제8조)
- 마. 예방접종 비용 신청 및 환수조치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9조, 제10조)
- 바.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과 비밀엄수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1조, 제12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715, FAX : 820-1474, E-mail : kyh06800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서울특별 시 동작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필수예방접종"이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한다)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말한다.
 - 2. "예방접종 지원사업"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(이하 "구민"이라 한다)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.
 - 3. "예방접종 비용"이란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의료행위를 한 위탁의료기관에서울특별시 동작구(이하 "구"라 한다)가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.
 - 4. "위탁의료기관"이란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한 「의료법」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말한다.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감염 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 하여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계획의 수립·시행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접종 계획을

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1.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
- 2.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
- 3.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
- 4. 그밖에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예방접종 지원) 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필수예방접종 외에도 질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인플루엔자
 - 2. 대상포진
 - 3.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
- 제6조(지원대상) ① 예방접종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인플루엔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연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다.
 -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-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- 다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 - 라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
 - 마. 「희귀질환관리법」 제12조에 따른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

- 바.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2. 대상포진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평생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.
 - 가. 60세 이상 구민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나.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.
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5조의2 비대상 외국인
- 2.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
- ③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, 비용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된다.
- 제7조(예방접종의 위탁) ①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「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」을 따른다.
 -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.
- 제8조(지원절차) ① 제6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7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,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.

-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,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.
- 제9조(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) ① 제7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백신비용과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.
 -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.
 -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.
 - 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,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한다.
- 제10조(환수조치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. 다만,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·관리해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
 - 2.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
- 제11조(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) 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법 제7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.
 -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 「의약품 부작

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|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2조(비밀누설의 금지) 이 조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 서는 아니 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료기관의 장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성 명

예방접종 예진표

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이래의 질문사항을 잘 읽어보시고, 본인(법정대리인, 보호자) 확인 란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주민등록번호

실제 생년월일		외국인 등록번호		-		(□남 □여)		
전화번호	(집) (휴대	배전화)		체	중	kg		
		본인(법정대리인, 보호자) 확인 ☑						
'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'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 추기적으로 수집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								
ᆻ급니다. 구가역으로 구입되는 영국는 아데와 붙습니다. ■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: 필수예방접종의 다음접종 및 완료 여부,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관련 문자								
■ 개인정보 수집·이용 항목: 개인정보(민감정보, 주민등록번호 포함), 전화번호(집/휴대전화) ■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: 5년								
예방접종을 하기 것에 동의합니다	전에 피접종자의 예방접종 내역을 (L	계방접종통합관리시 <i>스</i>	:템으로 사전 확인	l 하는				
* 예방접종 내역 수 있습니다.		_ O	ᅨ □ 아니오					
필수예방접종의 * 문자 수신에	니다.	_ O	ᅨ □ 아니오					
예방접종 후 이 * 문자 수신에 ·		_ o	ᅨ □ 아니오					
	본인(법경	성대리인, 보호자) 확인 ☑						
오늘 아픈 곳이 (있습니까? 아픈 증상을 적어주십시오	2.			_ o	ᅨ □ 아니오		
이 있습니까?	예란 포함) 혹은 백신접종으로 두드러?	_		인 적	_ o	ᅨ □ 아니오		
과거에 예방접종 (예방접종명:	후 이상반응이 생긴 일이 있습니까?	있다면 예방접종명을)	을 적어주십시오.		_ o	ᅨ □ 아니오		
	식 및 폐질환, 심장질환, 신장질환, 2 료 받은 일이 있습니까? 있다면 병명	•	비 질환, 혈액 질혼	<u></u> 우르	_ 0	ᅨ 🗆 아니오		
	있거나 기타 뇌신경계 질환(길랭-바레		습니까?		_ o	ᅨ □ 아니오		
암, 백혈병 혹은 면역계 질환이 있습니까? 있다면 병명을 적어주십시오. (병명 :						ᅨ □ 아니오		
최근 3개월 이내에 스테로이드제, 항암제,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?					O			
최근 1년 동안 수혈을 받았거나 면역글로불린을 투여받은 적이 있습니까?					O	ᅨ □ 아니오		
최근 1개월 이내에 예방접종을 한 일이 있습니까? 있다면 예방접종명을 적어 주십시오. (예방접종명 :)						ᅨ □ 아니오		
	신 중이거나 또는 다음 한 달 동안 임				O	ᅨ □ 아니오		
의사의 신잘결과	l와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	방섭송을 하겠습니다						
본인(법정대리인	l, 보호자) 성명 :	(서명)	접종대상자외	나의 관 기	ᅨ:			
* 피접종자가 출	출생신고 이전의 신생아인 경우 법정다	배리인의 주민등록번호	•	_)		
				년	월	일		
		사 (의 사 기 록 란)				확인 ☑		
체온:		예방접종 후 이상빈		l였음 -				
'이상반응 관찰을 문진결과 :	을 위해 접종 후 20~30분간 접종기관	<u>반에 버굴러야 암을 (</u>	일병하었음 					
군선결과 : 이상의 문진 및 진찰 결과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. 의사성명 : (서명)								

(□남 □여)

[별지 제2호서식]

예 방 접 종 실 시 대 장

번호	피접종자 인적사항				예방접종 실시 내용				환수조치			
	사유	일자	성명	생년 월일	주소	연락처	접종명	백신제조 번 호	접종 일시	접종자	예 진 의사명	불가사유

【관계법령】

▶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-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,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3. 18., 2015. 7. 6., 2020. 3. 4., 2020. 12. 1 5.>
 - 1.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
 - 2.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
 - 3.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
 - 4.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
 - 5.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· 분석 및 제공
 - 6. 감염병에 관한 조사 · 연구
 - 7. 감염병병원체(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,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) 수집・검사・보존・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(藥劑耐性 監視)
 - 8.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
 - 8의2.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
 - 9.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
 - 10.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
 - 11.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

- 12. 기후변화, 저출산·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·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
- 13.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
- 14.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
- 15.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, 교육 및 훈련
- 16.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,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
- 17.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, 특성 분석,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. 보고서 발간 및 지침(매뉴얼을 포함한다) 고시
- ③ 국가·지방자치단체(교육감을 포함한다)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,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6.>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 병의 발생 감시·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6.>

▶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9조(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)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. <개정 2015.

- 1. 6., 2017. 5. 29., 2018. 9. 18., 2019. 7. 9., 2020. 6. 2., 2020. 9. 11.>
- 1. 진료비

가. 지급 기준: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「국민건강보험 법」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「의료급여 법」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. 다만, 제3호에 따른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

나. 신청기한: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

- 2. 간병비: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
- 3.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

가. 지급 기준

- 1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: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
- 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: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
- 3) 1) 및 2) 외의 장애인으로서 「국민연금법」, 「공무원연금법」, 「공무원 제해보상법」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: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의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

나. 신청기한: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

4.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

가. 지급 기준: 사망 당시의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

나. 신청기한: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

5. 장제비: 30만원

제30조(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)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- 1.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: 본인
- 2.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경우: 유족 중 우선순위자
- ②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"이란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), 자녀, 부모, 손자·손녀, 조부모, 형제자매를 말한다.
- ③ 유족의 순위는 제2항에 열거한 순위에 따르되,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, 우선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.